

적도원칙

2020년 7월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금융업계 기준

www.equator-principles.com

적도원칙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주의사항

본 문서는 적도원칙 원문 「THE EQUATOR PRINCIPLES JULY 2020」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본 문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나, 적도원칙협회는 내용의 누락 및 불일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도원칙협회는 본 문서 이용자가 원문의 의도대로 내용을 이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도원칙 원문 「THE EQUATOR PRINCIPLES JULY 2020」은 영어로 발행되었으며, 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도원칙 원문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목 차

전문	2
적용 범위	4
접근 방법	5
원칙의 기술	7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7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7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9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10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10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12
원칙 7: 독립 검토.....	12
원칙 8: 서약.....	13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14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14
면책	16
부속서: 이행 요건	17
부속서 A: 기후 변화: 대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표.....	17
부속서 B: 최소 정보공개 요건.....	19
별지: 보충 정보	22
별지 I: 용어 설명.....	22
별지 II: 환경·사회 평가문서에서 다루어져야할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예시목록.....	30
별지 III: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32

전문

대규모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Project)는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금융 및 자문 기관으로서 환경·사회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동반자인 고객과 협력한다. 이러한 공통의 노력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무성과 및 환경·사회적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EPFI")은, 고객으로 하여금 프로젝트 개발 수명주기(Project Development Lifecycle) 중 식별된 부정적인 잠재적 또는 실질적 위험과 영향에 대처할 것을 권장할 것이다.

우리 EPFI는, 우리가 금융 지원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환경관리 규준을 반영하여 개발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 EPFI는 적도원칙의 적용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우리는 프로젝트가 생태계, 지역사회 및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및 완화되어야 하며, 영향이 잔류하는 경우 고객은 필요에 따라 인권 영향에 대한 치유 또는 환경 영향에 대한 상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프로젝트 지원 시:

- 인권 실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에 의거한 우리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것이다.
- *2015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목적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에 따라 프로젝트의 잠재적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EPFI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인식한다.
-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와 결정에 대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포함한 자연보전 활동을 지지한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지원 시 금융기관들이 환경 및 사회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공통된 기준과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적도원칙을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적도원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oject-Related Corporate Loans),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Project-Related Refinance) 또는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Project-Related Acquisition Finance)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공되는 브릿지론(Bridge Loans)과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Project Finance Advisory Services)의 경우, 우리는 고객에게 추후 장기자금 조달 시 적도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EPFI는 적도원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EPFI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광범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EPFI는 재량에 따라 적도원칙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도원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EPFI는 이행 경험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와 새로운 모범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다.

적용 범위

적도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적도원칙은 신규 프로젝트 지원 시 아래의 금융상품¹에 적용된다.

1.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2. 프로젝트 총액이 US\$10백만 이상인 **프로젝트금융**
3.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 i. 대출금액의 과반이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질적 지배권(Effective Operational Control)을 갖는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
 - ii. 총 대출금액 및 EPFI의 개별 약정금액(신디케이션 또는 매각 이전)이 각각 US\$50백만 이상
 - iii. 대출기간이 2년 이상
4. 상기 2항 및 3항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금융 또는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로 리파이낸스가 의도된 대출기간 2년 미만의 **브릿지론**
5.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
 - i. 프로젝트가 과거 적도원칙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 지원을 제공 받음
 - ii.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바 없음
 - iii. 금융계약서 서명 시점에 아직 프로젝트 준공(Project Completion)이 발생하지 않음

적도원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EPFI는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에 대해서도 적도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¹ 5개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는 별지 I(용어 설명) 참고.

접근 방법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EPFI는 원칙 1~10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을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

EPFI는 적도원칙의 해당 요건을 프로젝트에 계속 적용하기 위하여 신규 금융계약서에 기존의 모든 환경·사회 관련 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및 브릿지론

EPFI가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또는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경우, EPFI는 고객에게 적도원칙의 내용, 적용방법, 그리고 계획된 프로젝트에 적도원칙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인지시켜야 한다. EPFI는 고객에게 향후 장기자금 조달 시 적도원칙의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PFI는 적도원칙 적용 단계별로 고객을 안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A 또는 B등급(원칙 1에 정의된)으로 분류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 프로젝트가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고, 대출기간 동안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PFI는 고객에게 환경·사회 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프로세스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환경·사회 평가문서(Assessment Documentation, 이하 "평가문서")가 준비되고 프로젝트 개발이 대출기간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PFI는 필요시 원칙 7에 정의된 독립검토(Independent Review)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고객과 협력하여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를 지명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보 공유

업무상 비밀 유지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EPFI(Mandated EPFI)는 필요시 환경·사회 관련 정보를 적도원칙의 일관된 적용 목적으로만 다른 위임받은 금융기관(Mandated Financial Institution)과 공유할 수 있다.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공유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금융상품(“적용 범위”에 정의된)의 지원여부와 지원조건에 대한 일체의 의사는 각각의 EPFI가 내부 리스크 관리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 지원을 고려중인 EPFI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이 위임받기 전이라도 환경·사회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허가를 고객에게 요청하기도 하며, EPFI는 고객이 그러한 허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칙의 기술

원칙 1: 검토 및 등급 분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 지원이 요청된 경우, EPFI는 내부 환경·사회 검토 및 실사의 일환으로 인권,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영향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에 근거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급 분류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의 환경·사회 등급 분류 프로세스에 근거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이 다양하거나, 회복불능이거나 또는 전례가 없는 경우

B등급 -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위험 및/또는 영향의 건수가 적고, 범위가 대체로 현장에 국한되며, 대부분 회복 가능하고, 경감방안을 통해 용이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²

C등급 - 부정적인 환경·사회 위험 및/또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프로젝트

EPFI의 환경·사회 실사는 프로젝트의 특성, 규모, 개발단계와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 수준의 분류 등급에 비례하여 실시된다.

원칙 2: 환경·사회 평가

EPFI는 고객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별지 Ⅱ의 예시목록에 열거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음)를 EPFI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평가문서는 근로자(Workers),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Affected Communities)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을 프로젝트의 특성과 규모에

² B등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규모는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B등급 프로젝트는 A등급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취급될 것이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B등급 프로젝트는 보다 가볍게 취급될 수 있다. EPFI는 환경·사회 위험을 원칙 1~10에 의거하여 다루는 데 필요한 평가문서, 검토 및/또는 모니터링의 수준을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 적절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최소화 또는 경감하고, 그러한 영향이 잔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상쇄/치유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문서는 작성주체인 고객, 컨설턴트 또는 외부전문가에 관계없이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서술되어야 한다.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문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이하 "ESIA")를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나머지 B등급과 잠재적 C등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절차 과정에서 식별된 위험 또는 영향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한 제한적 또는 중점 환경·사회 평가가 적절할 수 있다.

고객은 부정적인 잠재적 인권 영향 및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ESIA 또는 기타 환경·사회 평가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은 인권 위험과 영향에 대한 평가 시 UNGP³를 참고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리스크평가(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는 TCFD의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Climate Physical Risk)과 기후변화의 전환 리스크(Climate Transition Risk) 분류를 따라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는:

-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⁴ 프로젝트에 대하여 요구되며, TCFD에 의해 정의된 관련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소재지에 상관없이 직접배출(Scope 1 Emissions) 및 간접배출(Scope 2 Emissions) 온실가스 합산량이 연간 10만 CO₂ 환산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요구된다. 기후변화의 전환 리스크(TCFD에 의해 정의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대안을 평가한 대안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수준과 성격은 프로젝트 종류뿐만 아니라 중요도와 심각성을 포함한 리스크의 성격에 좌우된다. 대안분석의 요건을 포함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에 대한 개요는 부속서 A를 참조한다.

³ 특히, 문단 17~21 참고.

⁴ 각주 2 참고.

원칙 3: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소재국의 환경·사회 이슈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EPFI는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한다. 그중에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환경·사회 관리체계, 법률제도, 그리고 조직역량을 보유한 곳도 있고, 환경·사회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 및 조직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곳도 있다.

전 세계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에 대한 EPFI의 실사는 프로젝트와 거래가 개별 원칙들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포함한다.

EPFI는 해당되는 경우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비지정국가(Non-Designated Countries) 소재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행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이하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이하 "EHS 가이드라인")(별지 Ⅲ 참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 지정국가(Designated Countries) 소재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 프로세스는 환경·사회 이슈에 관한 소재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는 프로젝트의 적용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준수 여부 또는 적용기준으로부터의 정당한 이탈을 EPFI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적용기준(상기 설명된)은 EPFI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지정국가 소재 프로젝트의 경우, EPFI⁵는 프로젝트 특유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소재국 관련 법률과 더불어 하나 또는 복수의 IFC 이행표준이 해당 위험을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PFI는 단독 재량에 따라 프로젝트 특유의 위험에 관한 추가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사를 보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수도 있다.

⁵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가 지원함.

원칙 4: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⁶, EPFI는 고객에게 환경·사회 관리시스템(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이하 "ESMS")의 구축 및/또는 유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에서 제기된 이슈를 다루고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담은 환경·사회 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이하 "ESMP")을 준비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기준이 EPFI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고객과 EPFI는 적도원칙 액션플랜(Equator Principles Action Plan, 이하 "EPAP")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EPAP는 적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EPFI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미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객의 약속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칙 5: 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Engagement)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근로자와 해당시 기타 이해관계자(Other Stakeholders)와 함께 체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을 중대하게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은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Informe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프로세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은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 개발 단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선호 언어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요구에 따라 협의 프로세스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조종, 간섭, 강압 및 위협은 없어야 한다.

고객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해당시 기타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에 상응하는 적정 평가문서를 현지언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은 합의된 모든 대책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의 결과를 고려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환경·사회 위험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의 초기,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착공 이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계속 공개되어야 한다.

⁶ 각주2 참고.

EPFI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는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국제법상의 소재국 의무를 포함한 원주민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소재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IFC 이행표준 7의 문단 13~17은 원주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하 "FPIC")⁷가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또는 관습적 사용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와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 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또는 관습적 사용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와 자연자원에서부터 원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 원주민 정체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 문화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전 세계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EPFI는 자격을 갖춘 독립 컨설턴트⁸에게 소재국 법률과 IFC 이행표준 7의 요건에 근거하여 원주민 협의절차와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원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책임이 소재국 정부에 있을 경우, EPFI는 IFC 이행표준 7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객에게 계획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협력할(해당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IFC 이행표준 7의 협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의의 협상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PIC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EPFI는 컨설턴트의 자문 의견에 근거하여 그러한 경우를 IFC 이행표준 7의 요건으로부터의 정당한 이탈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고객이 IFC 이행표준 7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⁷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FPIC의 정의는 없다. 고객과 영향을 받는 원주민 지역사회 간 선의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FPIC는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의사결정에 원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둔다. FPIC는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 또는 소수집단에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객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FPIC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는 IFC 이행표준 7에 기술되어 있다.

⁸ 이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이거나 자격을 갖춘 별도의 독립 컨설턴트로 법률 자문사를 포함한다.

원칙 6: 고충처리 메커니즘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에게 ESMS의 일환으로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사항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필요시 근로자 용도의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규모는 프로젝트의 위험과 영향의 규모에 상응하여야 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비용부담이 없고, 이슈 또는 우려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보복이 없는 쉽고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사법 또는 행정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근로자에게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⁹.

원칙 7: 독립 검토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EPFI의 실사 및 적도원칙 준수 여부의 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ESMP, ESMS,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문서를 포함한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EPAP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용기준으로부터의 정당한 이탈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유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 전문성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독립 검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자·양자 개발금융기관 또는 OECD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수행한 실사를 고려할 수 있다.

⁹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 기준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은 UNGP 원칙 27 및 31과 이에 관한 해설서(Commenta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칙 8: 서약

적도원칙의 중요한 강점은 준수에 관한 서약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EPFI는 고객이 환경·사회에 관한 서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 보완조치가 프로젝트의 재준수로 이어지도록 고객과 협력할 것이다. 만약 고객이 합의된 유예기간 안에 환경·사회에 관한 서약의 준수를 재확립하지 못한다면, EPFI는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 선언을 포함한 구제책 행사 권리를 보유한다.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고객은 환경·사회와 관련된 소재국의 모든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을 모든 중요 측면에서 준수할 것임을 금융계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은 모든 A등급과 B등급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내용을 금융계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 a)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모든 중요 측면에서 ESMP와 EPAP(해당되는 경우)를 준수한다.
- b) 내부 직원 또는 제3자 전문가에 의해 준비된 정기 보고서를 EPFI와 합의한 양식으로 제출하며(보고 빈도는 영향 정도에 비례하거나 소재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 보고서는 (i) ESMP와 EPAP(해당되는 경우)의 준수 여부를 문서화하고, (ii) 프로젝트 소재 지역, 주 및 국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법률, 규정 및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진술을 제공한다.
- c) 해체계획이 합의된 경우, 필요에 따라 해체계획에 맞게 시설을 해체한다.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

고객은 기존의 모든 환경·사회 의무가 새로운 금융계약서에 계속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칙 9: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¹⁰의 경우, EPFI는 금융종결(Financial Close) 이후 그리고 대출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 모니터링과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과 보고는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EPFI는 원칙 8b가 요구하는 빈도로 EPFI에 제출될 고객의 모니터링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자격과 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 지역 또는 지방정부,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EPFI는 상기의 접근방식과 같이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선임을 요구할 것인지 EPFI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에 의존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자·양자 개발금융기관 또는 OECD 수출신용기관이 실시한 모니터링을 참고할 수 있다.

원칙 10: 정보공개 및 투명성

고객의 정보공개 요건

다음과 같은 고객의 정보공개 요건이 원칙 5의 공개 요건에 추가된다.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 고객은 최소한 ESIA 요약문이 온라인을 통하여 접근 및 이용 가능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인권과 기후변화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요약 내용을 ESIA 요약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이 10만 CO₂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은 프로젝트 운영기간 동안 배출량(적절할 경우 온실가스 효율

¹⁰ 각주 2 참고.

비율¹¹과 함께)을 연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자세한 요건은 부속서 A를 참조한다.

- EPFI는 상업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생물다양성 데이터가 미래의 의사결정 및 연구 응용분야에서 접근 및 재사용될 수 있도록 고객이 해당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과 상태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¹², GBIF) 및 유관 국내·국제 정보 저장소와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EPFI의 정보공개 요건

EPFI는 금융종결 거래와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및 경험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EPFI는 적절한 비밀유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부속서 B에 자세히 기술된 최소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¹¹ 적절한 경우, 조직은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산업별 온실가스 효율 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배출 집약도와 관련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생산 단위(예: 생산 단위, 종업원 수 또는 부가가치)당 배출량이 널리 사용된다(TCFD Implementation Annex, 2017년 6월, p.17)

¹² 참고: www.gbif.org

면책

적도원칙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준과 틀이다. 적도원칙은 어떠한 개인이나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IFC, 세계은행그룹, 적도원칙협회(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또는 다른 EPFI에 의존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발적·독립적으로 적도원칙을 채택 및 이행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이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한 적도원칙의 요건과 명백히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국의 법률과 규정이 우선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도원칙협회는 EPFI의 전환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다. 모든 EPFI는 2020년 10월 1일까지 EP4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속서: 이행 요건

이 부속서에 기술된 이행 요건은 적도원칙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부속서 A: 기후 변화: 대안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표

대안분석

대안분석은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프로젝트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 및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직접배출에 대한 대안분석은 실행 가능한 최상의 환경 옵션을 모색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연료 또는 에너지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대안분석이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대안분석은 해당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일정을 따라야 한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섹터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안분석은 채택한 기술과 비교 가능한 에너지 효율과 (적절할 경우) 온실가스 효율 비율을 갖고 있고 동종업계 및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실행가능 기술의 비교분석을 포함한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높은 섹터란 일반적으로 석유 및 가스, 화력 발전, 시멘트 및 석회 제조, 일관 제철소, 비금속 제련 및 정련, 주조업, 펄프공장과 잠재적으로 농업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객은 대안분석 완료 후 적절한 문서화를 통하여 기술 및 재무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근거와 왜 특정 기술이 선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기준(예시: IFC 이행표준 3)에 명시된 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량 산정 및 공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로젝트, 조직 및 관할구역 전체에 걸친 집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프로토콜¹³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고객은 국가 온실가스 보고방법이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만 CO₂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EPFI는 고객이 운영기간 동안 연간배출량(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과 적절한 경우 온실가스 효율 비율을 연 단위로 공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만 CO₂ 환산톤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고객의 공표는 권장되어야 된다. 공표 요건은 소재국의 정보공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제 요건,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배출량 보고가 이루어지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와 같은 자발적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충족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EPFI는 고객에게 ESIA의 일부로 대안분석 요약문을 공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대안분석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배출량 공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는 높은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어야 한다.

-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에 예기되는 기후변화 리스크(TCFD에 의해 정의된 전환 및/또는 물리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 고객은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프로세스,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예시: 리스크 완화, 이전, 감수 또는 통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에서는 필요시 프로젝트가 소재국의 국가 기후 공약에 부합한가의 여부도 고려한다.

¹³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다. 관련 정보는 ghgprotocol.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부속서 B: 최소 정보공개 요건

EPFI는 아래 섹션에 자세히 기술된 요건에 따라 연 1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개인과 관련된 사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는 EPFI의 책임이다. 해당 보고 내용은 EPFI 웹사이트의 동일 위치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EPFI는 모든 적용건수 및 이행 보고에 대한 보고기간(예시: 시작 및 종료일자)을 명시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 적용건수

EPFI는 보고기간 동안 위임을 받은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의 총 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 건수는 섹터와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한 적용건수는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과 구분하여 별도의 제목하에 보고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의 경우, 보통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활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등급과 독립검토 실시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 및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적용건수

EPFI는 보고기간 동안 금융종결에 이른 프로젝트금융 총 건수와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의 총 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 상품별 총 건수는 등급(A, B 또는 C)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섹터(광업, 인프라, 석유 및 가스, 전력, 기타)
- 지역(미주,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 국가(지정국가 또는 비지정국가)
- 독립 검토 실시 여부

프로젝트금융 적용건수와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적용건수는 각각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

EPFI는 보고기간 동안 금융종결에 이른 리파이낸스 및 인수금융 총 건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 상품별 총 건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섹터(광업, 인프라, 석유 및 가스, 전력, 기타)
- 지역(미주,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 국가(지정국가 또는 비지정국가)

프로젝트금융 건에 대한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또는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의 경우, EPFI는 아래에 기술된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프로젝트명 공개 요건을 따라야 한다.

브리징론 적용건수

브리징론에 대한 적용건수는 특성상 정보공개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행 보고

EPFI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도원칙 이행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적도원칙 검토자(Equator Principles Reviewers)의 권한(예시: 책임과 인원)
- 심사과정에서 적도원칙 담당자, 영업부서 그리고 경영진 각각의 역할
- 신용 및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에 적도원칙 도입

적도원칙 채택 최초 연도에 대해서 EPFI는 내부 준비 및 직원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연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PFI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프로젝트명 공개(관련 리파이낸스 및 인수금융 포함)

EPFI는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 게재를 위해 프로젝트명 자료를 적도원칙협회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명 보고는 금융종결에 이른 프로젝트금융 건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금융종결에 이른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에 대하여도 실시가 권장되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고객의 동의를 득할 것
- 적용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할 것
- 보고 결과로서 특정 관할권에서 EPFI의 추가 부담이 없을 것

프로젝트명 보고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디케이트에 포함된 EPFI들은 금융주선기관 또는 환경 대리은행이 그들을 대표하여 고객 동의를 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EPFI는 금융종결 이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EPFI는 다음 프로젝트명 자료를 직접 또는 이를 게재한 웹링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명(대출 계약서상 명칭 및/또는 공개적으로 인정된 명칭)
- 거래가 금융종결된 연도(역년)
- 섹터(광업, 인프라, 석유 및 가스, 전력, 기타)
- 소재국명

개별 EPFI는 자체 보고의 일환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별지: 보충 정보

별지 I: 용어 설명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한, 적도원칙은 IFC 이행표준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를 사용한다.

Acquisition Finance (인수금융): 프로젝트를 인수 또는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으로, 프로젝트 회사 인수의 경우 고객은 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어야 함.

Affected Communities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영향 범위 내에 있고, 프로젝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지 공동체.

Assessment (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환경·사회 평가) 참조.

Assessment Documentation (평가문서):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Documentation (환경·사회 평가문서) 참조.

Asset Finance (자산금융): 자산(예시: 항공기, 화물선, 장비) 구입 용도의 대출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

Bridge Loan (브릿지론): 보다 장기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에 제공되는 중간 대출.

Buyer Credit (구매자 신용): 수출자 측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 측의 은행에 대출하는 증장기 수출신용.

Climate Physical Risks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기후 패턴의 이벤트 주도형 변화(급성) 또는 장기적 변화(만성)를 수반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리스크. 급성 물리적 리스크는 사이클론,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상현상의 심각성 증가를 포함하는 이벤트 주도형 리스크를 지칭. 만성 물리적 리스크는 해수면 상승이나 만성적 혹서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 패턴의 장기적 변화(예시: 지속적 고온)를 의미. (출처: TCFD 권고안, 2017년 6월)

Climate Transition Risks (기후변화의 전환 리스크): 저탄소 경제로 조정하는 프로세스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로, 배출 제한 또는 탄소세 부과 정책 및 기타 유관 정책과 수자원·토지 이용 규제 또는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적·법률적 리스크, 기술 및 시장 변화로 인한 수요 공급의 변화, 그리고

저탄소 및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에 조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객 또는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평판 리스크를 포함한다(출처: TCFD 권고안, 2017년 6월).

Critical Habitats (중요 서식지): 다음과 같이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닌 지역 (i) 멸종위급 및/또는 위기종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 (ii) 고유종 및/또는 서식지역이 한정된 종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지, (iii)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및/또는 무리를 이루는 종의 집단을 유지시키는 서식지, (iv)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생태계 및/또는 독특한 생태계, 그리고/또는 (v) 중요한 진화 과정과 연관된 지역.

Critically Endangered and/or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급 및/또는 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목록¹⁴에 포함된 종을 뜻함

Designated Countries (지정국가): 사람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환경·사회 관리체계, 법률제도 및 조직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임. 적도원칙협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각국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한 프록시로서, 적도원칙협회는 특정국가가 지정국가 자격을 얻기 위해선 OECD 회원국임과 동시에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 지정국가 목록이 국가 지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는 분기마다 적도원칙협회 사무국에 의해 검토됨. 지정국가 목록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Effective Operational Control (실질적 지배권):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의 직접적인 지배(운영자 또는 주요주주로서)와 간접적인 지배(예시: 고객의 자회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포함.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Assessment) (환경·사회 평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해당되는 경우 인권과 기후변화 리스크 및 영향 포함)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Documentation (Assessment Documentation) (환경·사회 평가문서 또는 평가문서):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위해

¹⁴ 타 목록에 근거한 중요 서식지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IUCN 지침을 따르는 국가에서 서식종이 국가/지역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또는 위기(Endangered)종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중요 서식지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 (ii) 국가 또는 지역 지정 목록에 포함된 종 분류 기준이 IUCN 분류 기준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예시: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보호종” 또는 “제한된 종”으로 분류), 종 분류 근거와 목적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경우, 중요 서식지에 대한 판단은 동 평가를 근거로 하게 된다.

준비되는 일련의 문서이며, 문서의 범위와 세부사항은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비례함. 프로젝트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평가문서는 해당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임. 평가문서의 예로는 환경·사회영향평가서(ESIA), 환경·사회 관리계획(ESMP), 그리고 범위가 더욱 제한된 문서(감사보고서, 위해성 평가서, 유해성 평가서, 프로젝트 관련 환경 허가서 등)가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일환으로 비기술적 환경 요약문을 공개함으로써 평가문서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음.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환경·사회영향평가서):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로, 통상 중대한 환경 또는 사회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정 물리적 요소, 양상 및 설비를 수반하는 신규 개발 또는 대규모 확장 사업에 대해 준비되며, ESIA가 다루는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관한 개요는 별지 ㉔에 마련되어 있음.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 (환경·사회 관리계획): 환경·사회 평가의 일환으로 식별된 위험과 영향을 회피, 최소화 및 보상/상쇄를 통하여 다루고 완화하기 위한 고객의 약속을 요약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인 완화 조치의 간략한 설명부터 보다 포괄적인 일련의 관리계획(예시: 물 관리계획, 폐기물 관리계획, 이주 조치계획, 원주민 계획, 비상사태 준비 및 대응계획, 해체계획)까지 다양할 수 있음. ESMP의 세부사항 및 복잡성의 정도와 식별된 조치 및 대응방안의 우선순위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며, ESMP의 정의와 특징은 IFC 이행표준 1에 기술된 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Program)과 대체로 유사함.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ESMS)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기업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 사회,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ESMS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하도록 설계됨. ESMS는 매뉴얼과 관련 근거문서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한 환경·사회 이슈와 관련된 정책, 관리 프로그램 및 계획, 절차, 요건, 성과지표, 책임, 교육 및 정기적 감사와 검사가 포함됨. ESMS는 ESMP 및/또는 EPAP의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본 용어는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혹은 양 기간 동안의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음.

Equator Principles Action Plan (EPAP) (적도원칙 액션플랜): 프로젝트가 적도원칙에 정의된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평가문서, ESMP, ESMS 또는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기록한 문서에 나타난 미비점을 다루는 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EPFI 실사의 결과로서 준비되며, EPAP는 통상 표 형식으로 완화조치부터 환경·사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사 또는 계획에 이르는 개별적 대응방안을 나열함.

Equator Principles Association (적도원칙협회): 적도원칙의 관리,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EPFI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단체임. 적도원칙협회 사무국은 EPFI의 프로젝트명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포함한 적도원칙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 참조.

Equator Principles Reviewers (적도원칙 검토자):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의 환경·사회적 측면을 검토하는 EPFI의 직원으로, 이들은 별도의 적도원칙팀 소속이거나 적도원칙의 내부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심사, 지속가능경영 (또는 유사한) 부서/부문의 구성원일 수 있음.

Export Finance (수출금융 또는 수출신용): 수출 재화 및/또는 서비스의 해외 구매자가 대금지불을 일정기간 동안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증 또는 금융추진을 뜻하며, 수출신용은 일반적으로 단기(통상 2~5년 상환), 장기(통상 5년 이상)로 나뉨.

Financial Close (금융종결): 차입금의 최초 인출에 관한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조건의 이행이 면제된 날짜.

Financial Threshold (금융 임계값): 적도원칙 프레임워크 적용에 수반되는 적지 않은 비용(실사 및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자문 의뢰 포함)과 부정적인 잠재적 환경·사회 위험 개연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복잡한 특성에 기인하여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적용되는 척도.

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동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FPIC의 정의는 없음. 고객과 영향을 받는 원주민 지역사회 간 선의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FPIC는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의사결정에 원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둬. FPIC는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 또는 소수집단에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객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¹⁵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지구상 모든 종류의 생물체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공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및 연구 인프라. GBIF는 다양한 출처의 생물다양성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형 커뮤니티 개발 기준을 활용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의 창출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증거 제시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의 도모를 목표로 함.

Human Rights (인권):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표준에 설명되어 있음.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 여기서 인권이란 최소한

¹⁵ 참고: www.gbif.org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뜻하며, 이는 국제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내 포함된 기본권리 관련 원칙을 뜻함.

Independent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ultant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 EPFI가 인정하는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적격 독립 법인 또는 컨설턴트.

Independent Review (독립검토): 환경·사회 관리계획, 환경·사회 관리시스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포함된 평가문서에 대해 독립 환경·사회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검토.

Indigenous Peoples (원주민): “원주민”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음. 국가별로 원주민을 “Indigenous ethnic minorities”, “aboriginals”, “hill tribes”, “minority nationalities”, “scheduled tribes”, “first nations” 또는 “tribal groups”와 같은 용어로 지칭할 수 있음. IFC 이행표준 7에서와 같이 여기서 “원주민”이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다양한 정도로 갖추고 있는 독특한 사회 및 문화 집단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임.

- “자신들을 독특한 토착 문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을 이와 같이 인식함”
- “프로젝트 부지 내에 존재하고 지리적으로 구별되는 거주지 또는 조상 영토와 이곳의 자연자원에 대한 집단적 연계”
- “주류 사회 또는 문화와는 다른 관습적 문화, 경제 또는 정치적 제도”
- “거주하는 국가·지역의 공식 언어 또는 언어들과 다른 경우가 많은 별도의 독특한 언어 또는 방언”

UN 원주민 권리 선언과 같은 UN 인권 협약은 세계 원주민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제 수단임. 또한, 일부 국가들은 원주민 보호를 위하여 여타의 국제·지역 단위 협약을 입법 통과시키거나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 해당 관할권에서는 동 협약을 고려하여야 함.

Informed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와 참여): 의견 및 정보의 심도 있는 교환과 고객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제안된 완화 방안, 개발 이익과 기회의 공유, 이행 이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협의.

Known Use of Proceeds (자금용도): 차입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

Mandated 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 or Mandated Financial Institution (위임받은 EPFI 또는 위임받은 금융기관):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 또는 거래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과 계약한 금융기관.

Non-Designated Countries (비지정국가): 적도원칙협회 웹사이트의 지정국가 목록에 없는 국가(지정국가 용어 설명 참조).

Operational Control (사업에 대한 지배권): Effective Operational Control (실질적 지배권) 참조.

Other Stakeholders (기타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 당국, 해당 프로젝트와 인접한 프로젝트 및/또는 비정부기구가 포함될 수 있음.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고 2016년 11월 4일 시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Dec 1/CP.21 (2015) UN Doc FCCC/CP/2015/10/Add.1) 하의 문서임

Project (프로젝트): 분야를 불문하고 특정 소재지(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지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들 부지가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음)에서의 개발을 의미함.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개선도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됨. 적도원칙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발전소, 광업, 석유 및 가스 개발, 화학공장, 인프라 개발, 제조공장, 대규모 부동산 개발, 민감지역에서의 부동산 개발 및 중대한 환경 및/또는 사회 위험과 영향을 발생시키는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프로젝트는 미개발 지역 또는 과거 개발이 이루어졌던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 확장 또는 개선일 수 있음. 수출신용기관 지원 거래의 경우, 수출 대상 신규 영리, 인프라 또는 산업 관련 사업은 프로젝트로 간주됨.

Project Completion (준공): 사전 정의된 기준(일반적으로 준공검사에 규정됨)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상 완공되고,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게 된 날을 뜻함. 이 날짜 이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은 주요한 상환 방법이 됨.

Project Development Lifecycle (프로젝트 개발 수명주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뜻함. 이는 설계 및 계획, 건설, 생산, 폐쇄, 해체 및 프로젝트 부지 복원뿐만 아니라, 공급품 조달, 허가 취득, 허가 부여 및 라이선싱, 자금 조달 및 상환을 포함함. 예로, 수명주기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경우 1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5년(또는 그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음.

Project Finance (프로젝트금융): 대출기관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 및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금융은 발전소, 화학 처리 공장, 광업, 교통 인프라, 환경, 통신 인프라와 같이 대체로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설비를 위해 사용됨.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에서 대출기관은 발전소가 판매하는 전력과 같이 프로젝트 생산물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원으로부터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상환받게 됨. 고객은 일반적으로 설비의 개발, 소유 및 운영 이외의 다른 역할 수행은 금지된 특수목적법인이며, 따라서 대출상환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산의 담보가치에 주로 의존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11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자본측정 및 자본기준의 국제 통일에 관한 새로운 기준("바젤 II")"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Basel II")] 참고. 비소구형 금융으로서, 대출금이 하나의 특정 매장자원(예시: 유전 또는 광산) 개발에 사용되는 광업분야의 매장량기초금융은 적도원칙 하에서 프로젝트금융으로 간주됨.

Project Finance Advisory Services (프로젝트금융자문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잠재적 금융조달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은 금융조달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음.

Project-Related Corporate Loans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 신규 개발 또는 확장(예시: 시설면적의 확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체(민간, 공공, 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에 대한 대출로, 자금용도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a) 대출기관은 (프로젝트금융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며, 기업 또는 모회사 보증 형태로 담보권 존재
- b) 대출서류에 전체 대출금의 과반이 해당 프로젝트 용도임이 명시되고, 이러한 대출서류는 금융조건 제안서, 사업설명서, 대출 계약서 또는 대출의 자금용도에 대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기타 진술을 포함할 수 있음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정부 소유 기업과 정부를 대신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타 법인에 대한 대출을 포함함. 모든 A등급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에 대한 대출을 포함함.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구매자 신용 방식의 수출금융을 포함할 것이나, 공급자 신용 방식의 수출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제외함. 또한,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은 자산금융, 헤지거래, 리스, 신용장 거래, 일반자금 대출, 회사의 운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운전자금 대출과 같이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제외함.

Refinance (리파이낸스):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세스로, 신규 대출은 기존대출을 상환(폐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대출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근접해 있지 않아야 함.

Scope 1 Emissions (직접배출): 프로젝트의 물리적 경계 안에서 소유 또는 통제되는 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cope 2 Emissions (간접배출): 프로젝트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외부 생산과 관련하여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Sensitive Area (민감지역): 습지,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갖는 산림,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원주민 및 기타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지역, 국립공원 및 국내법 또는 국제법으로 인정된 기타 보호지역과 같이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

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 커뮤니케이션, 환경·사회 정보공개, 참여, 정보공유에 입각한 협의, 그리고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IFC 이행표준의 규정을 말하며, 적도원칙에서는 원칙 5에 기술된 모든 요건도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미함.

Supplier Credit (공급자 신용): 수출업체가 해외 수입업체에게 공여하는 중장기 수출신용.

TCFD Recommendations (TCFD 권고안): 2017년 6월 15일 발간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를 뜻함. 추가 정보는 <https://www.fsb-tcfd.org/> 참조.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다음 문서로 제공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s,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11 reference HR/PUB/11/04.

Workers (근로자):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건설업자, 하청업자와 임시 근로자를 포함함.

별지 표: 환경·사회 평가문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잠재적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예시목록

아래 목록은 평가문서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의 개요를 제공한다. 목록은 단지 예시 용도임에 주의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평가 프로세스는 나열된 모든 이슈를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슈만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환경·사회 기초 현황 평가
2. 실행 가능하고 환경·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안 검토
3. 소재국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 및 협정(2015 파리 협정 포함)에 따른 요건
4. 생물다양성(교란된 서식지, 자연 및 중요 서식지의 멸종위기종과 민감한 생태계 포함)의 보호와 보전 및 법정보호지역의 식별¹⁶
5.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적절한 독립 인증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포함)
6. 위험물질의 사용 및 관리
7. 주요 유해성 평가 및 관리
8. 효율적 생산(결과 조정 요인당 총 에너지 소비량¹⁷), 에너지의 운송 및 사용
9.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최소화, 오염통제(유출수 및 대기 배출) 및 폐기물 관리
10.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배출 집약도
11. 물 사용, 물 이용 집약도 및 수자원
12. 토지 피복, 토지 이용 실행
13. 물리적 기후 리스크 및 적응 기회에 대한 고려, 변화하는 기상패턴 및 기후조건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성공 가능성
14. 기존 프로젝트, 지원 대상 프로젝트, 그리고 향후 계획된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영향
15. 부정적인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에 대한 고려. 만약 이와 같은 영향이 식별되지 않았다면 인권 위험이 없음을 결정한 방법에 대한 설명(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취약한 인구가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¹⁶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지역의 보전에 기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원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중요 서식지 평가 과정에서 식별되어야 하며, 금융지원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EPFI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지역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UNESCO) 자연 및 복합 세계유산 부지와 멸종제로연합(Alliance for Zero Extinction)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지를 포함한다. IFC 이행표준 6에 대한 지침서(2019년 2월) 참고.

¹⁷ 동 변경사항과 10~13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은 TCFD Implementation Annex 8페이지의 영향을 받았음.

16. 노동 관련 이슈(4개의 핵심노동기준 포함) 및 직업 보건과 안전
17.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의 협의 및 참여
18. 사회경제적 영향
19.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 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
20. 성별 영향과 불균형적인 성별 영향
21.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22. 원주민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제도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원주민의 전통적 소유 또는 관습적 사용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 포함)
23.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24.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보호(프로젝트의 보안요원 활용에 따른 위험, 영향 및 관리 포함)
25. 화재예방 및 생명안전

별지 Ⅲ: IFC의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행표준과 세계은행그룹의 환경·보건·안전 가이드라인

적도원칙에서 원칙 3의 “당시 적용되는 기준”이란 IFC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의 2개 개별 부분을 뜻한다.

1. IFC 이행표준(Performance Standards, PS)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행표준¹⁸은 다음과 같다.

- PS1 -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 PS2 - 노동 및 노동 환경
- PS3 -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 PS4 -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보안
- PS5 -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PS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PS7 - 원주민
- PS8 - 문화유산

각 이행표준별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다. EPFI는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지만, EPFI 및 고객이 이행표준에 대한 추가 지침이나 해석을 찾고자 할 때 지침서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때때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예로, 이행표준 6에 대한 지침서가 2019년 2월 업데이트 되었음).

IFC 이행표준, 지침서, 그리고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은 IFC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2. 세계은행그룹의 EHS 가이드라인

세계은행그룹의 EHS 가이드라인¹⁹은 IFC 이행표준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산업에 관한 국제 모범 기준(Good International Industry Practice, GIIP)의 사례를 담고 있는 기술적 참고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비지정국가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¹⁸ 참고: 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Sustainability-At-IFC/Policies-Standards/Performance-Standards/

¹⁹ 참고: 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sustainability-at-ifc/policies-standards/ehs-guidelines

비용으로 신규 시설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수준과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다음 두 가지 지침이 사용된다.

일반 EHS 가이드라인(The General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잠재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범분야 이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
- 직업 보건 및 안전
- 지역사회 보건 및 안전
- 건설
- 해체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부문별 가이드라인(The Industry Sector Guidelines)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별 특유의 영향과 성과지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그룹으로 분류된다.

농업 관련 산업 및 식량 생산

- 일년생 작물 생산
- 수상 양식
- 양조
- 유제품 가공
- 어류 가공
- 식품 및 음료 가공
- 축산
- 육류 가공
- 다년생 작물 생산
- 가금류 가공
- 가금류 생산
- 제당
- 식물성 기름 생산 및 가공

화학

- 석탄 가공
- 대규모 무기화합물 제조 및 콜타르 증류
- 대규모 석유계 유기화학물질 제조
- 천연가스 가공
- 질소 비료 제조
- 유지화학물질 제조
- 농약 제제, 제조 및 포장
- 석유정제
- 석유계 폴리머 제조
- 의약품 및 생명공학 기반 제조
- 인산 비료 제조

일반 제조업

- 비금속 제련 및 정련
- 시멘트 및 석회 제조
- 세라믹 타일 및 위생도기 제조
- 건설용 원료 채굴
- 주조
- 유리 제조
- 일관 제철소
- 금속, 플라스틱, 고무 제품 제조
- 인쇄
-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 가죽 제조
- 식물 제조

전력

- 송전 및 배전
- 지열 발전
- 화력 발전
- 풍력 발전

광업

- 광업

임업

- 보드 및 파티클 기반 제품
- 임산물 생산
- 펄프 및 제지 공장
- 제재 및 목재 기반 제품

석유 및 가스

- 액화 천연가스 시설
- 해상 석유·가스 개발
- 육상 석유·가스 개발

인프라

- 항공 운송
- 공항
- 원유 및 석유 제품 터미널
- 가스 배급 시스템
- 의료 시설
- 항만 및 터미널
- 철도
- 석유 소매 네트워크
- 해운
- 통신
- 유료 도로
- 관광 및 숙박시설 개발
- 폐기물 관리 시설
- 물과 위생 시설